

용인시 보훈회관 설치 운영 조례

제정 1993. 11. 19 조례 제1337호
개정 1996. 3. 1 조례 제 8호(조례·규칙등 공포에 관한 조례)
1998. 5. 6 조례 제 120호
1999. 2. 5 조례 제 164호(행정기구 설치 조례)
1999. 4. 3 조례 제 194호
2001. 11. 10 조례 제 355호
2005. 10. 5 조례 제 680호
일부개정 2013. 5. 7 조례 제1285호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국가보훈 기본법」 제5조 및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조에 따라 국가유공자의 애국정신을 기리고 계승·발전시키며, 보훈단체 활동의 활성화와 그 유족 및 가족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용인시 보훈회관을 설치·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[전문개정 2013. 5. 7]

제2조(명칭 및 위치) 용인시 보훈회관(이하 “회관”이라 한다)의 명칭 및 소재지는 다음과 같다.

명 칭	소 재 지
용인시 보훈회관	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 376-7번지

[전문개정 2005. 10. 5]

제3조(시설) 회관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둔다.

1. 사무실
2. 다목적실
3. 회의실 및 부대시설

제4조(용도) 회관은 다음의 용도로 사용한다. <개정 1999. 4. 3>

1. 보훈단체 사무실
2. 주민, 보훈단체 등의 회의, 집회, 각종행사 등의 장소 이용

용인시 보훈회관 설치 운영 조례

3.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복지관련 사업

4. 삭제 <1999. 4. 3>

제5조 삭제 <1999. 4. 3>

제6조 삭제 <1999. 4. 3>

제7조(운영관리) ① 회관은 시장이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훈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. <개정 2005. 10. 5>

② 제1항의 위탁운영의 경우 시장은 수탁자와 사용료의 납부, 시설에 대한 책임, 계약보증 등 위탁관리에 필요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, 시설보호와 적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. <개정 2005. 10. 5>

제8조(사용신청 및 허가) ① 회관의 사용은 시관내 거주하는 주민과 보훈단체, 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으로 하고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 이용할 수 있다. 다만,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<개정 2005. 10. 5>

② 시장은 회관 사용허가 시 시설의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이거나 지시할 수 있다. <개정 2005. 10. 5>

③ 제1항에 의거 회관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사용허가 신청서를 사용 3일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④ 제3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사용가부를 결정하고 사용허가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당해 신청자에게 가부를 통지하여야 한다. <개정 2005. 10. 5>

제9조(사용허가의 제한)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제한·정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.

1. 이 조례에 의한 조건이나 지시를 위반할 때
2. 특별시설 등으로 회관시설과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
3. 기타 회관의 관리유지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
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으로 사용자에게 생긴 손해에 대하여 시장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.

제10조(사용료) 회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에 의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. <개정 2005. 10. 5>

제11조(사용료 감면)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10조 규정에 의한 사용료를 전부 감면할 수 있다. <개정 1998. 5. 6>

1. 보훈단체가 직접 사용할 때
2. 지방자치단체가 주관 또는 후원하는 행사
3. 비영리 목적으로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제12조(사용취소 및 중단) 회관사용허가신청자가 사용허가기간 만료 전에 사용을 취소·중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거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.

제13조(원상복구) ① 회관사용자가 사용허가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사용을 취소·중단하였을 경우에는 시설 또는 설비 등을 사용자가 원상복구하고 시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.

② 제1항의 원상복구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하며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시장이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. 이 경우 사용자가 설치한 장비와 시설의 파손에 대하여 시장은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철거된 장비와 시설물을 철거일로부터 5일 이내에 사용자가 인수하지 않을 경우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. <개정 2005. 10. 5>

제14조(사용자의 손해배상)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관리의무를 소홀히 하여 회관 내의 설비, 기타 시설물을 망실·훼손하였을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의 망실 또는 훼손에 대하여 사용자는 그것이 자기의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.

제15조(양도 및 시설변경금지) ①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회관운영관리를 위탁받는 자는 시장의 허가 없이 권리의 양도는 물론 시설의 구조와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관리자로서의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. <개정 2005. 10. 5>

② 제8조에 의하여 사용자는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.

용인시 보훈회관 설치 운영 조례

제16조(홍보물 부착) 사용자는 회관사용에 따른 각종 현판, 행사용 홍보물, 기타 홍보물을 부착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.

제17조(준용)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「용인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」를 준용한다. <개정 2005. 10. 5>

제18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1996. 3. 1>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생략

부칙 <1998. 5. 6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1999. 2. 5>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내지 제3조 생략

부칙 <1999. 4. 3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01. 11. 10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05. 10. 5>

이 조례는 일반구 및 행정동을 설치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13. 5. 7 조례 제1285호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1]

보훈회관 사용료

사무실, 다목적실, 회의실(1일 사용료)

(단위 : 원)

요금구분	기준	사 용 요 액		비 고
		일반단체 및 개인		
1일(08:00~23:00)				
평 일	1회	52,000원		
휴 일	1회	65,000원		
오전(08:00~12:00)				
평 일	1회	16,000원		
휴 일	1회	20,000원		
오후(13:00~17:00)				
평 일	1회	16,000원		
휴 일	1회	20,000원		
(18:00~23:00)				
평 일	1회	20,000원		
휴 일	1회	25,000원		

용인시 보훈회관 설치 운영 조례

[별지 제1호서식] <신설 2005. 10. 5>

용인시 보훈회관 사용허가 신청서

사용하고자 하는 시설물			
사용기간	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	(일 시 분간)
사용목적			
사용방법			
사용시 특별한 시설을 요하는 개			
참가예정인원			
입장료징수여부		사용료 면제여부	
사용료		기 타	

위와 같이 귀 보훈회관시설을 사용하고자 사용료를 선납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주소 또는 단체명 :

대표자 성명 : (인)

용인시장 귀하

[별지 제2호서식] <신설 2005. 10. 5>

용인시 보훈회관 사용허가 통지서

주 소 :

성 명 :

허가사항 :

1. 허가물건 표시

2. 허가기간

년	월	일부터	오전()
		일 간	오후()
년	월	일까지	야간()

사용요금 :

허가조건

1. 「용인시 보훈회관 설치 운영 조례」와 관계법규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2. 사용 중 불의의 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책임을 진다.
3. 용인시 보훈회관 시설 또는 집기의 손상이 있을 때에는 이를 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.

위와 같이 조건을 부여 허가함.

년 월 일

용 인 시 장 (인)

용인시 보훈회관 설치 운영 조례

[별지 제3호서식] <신설 2005. 10. 5>

용인시 보훈회관 사용불허가 통지서

주 소 :

성 명 :

신청내용 :

1. 요사용건물
2. 사용 기간

불허가 사유

- 1.
- 2.
- 3.
- 4.

위 사유로 인하여 허가를 할 수 없음을 통지함.

년 월 일

용 인 시 장 (인)

[별지 제4호서식] <신설 2005. 10. 5>

용인시 보훈회관 사용중단 신청서

허가받은시설물			
사 용 기 간	20 . . 부터 20 . . 까지	(일 시 분간)	
사 용 목 적			
사 용 중 단 일 시			
참 석 인 원		참 석 범 위	
입장료징수여부		사 용 료 면 제 여 부	
사 용 료	원	기 타	

위와 같이 귀 보훈회관시설을 사용 중단하고자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주소 또는 단체명
대표자 성명 (인)

용 인 시 장 (인)